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(임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9686

발의연월일 : 2026. 7. 1.

발 의 자 : 임미애・송재봉・김한규
윤준병・윤종오・손 솔
김문수・박해철・이기헌
권칠승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에 있어 시・도에 설치된 자치구・시・군의원선거구획정위가 시・도의회에 획정안을 제출하고, 시・도의회에서 이를 조례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・도의회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마음대로 획정안을 수정할 수 있어,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의 취지로 선거제도를 결정해도 3,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등 그 취지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음.

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 있어 국회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재획정은 요구할 수 있어도 직접 수정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,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에 있어서도 시・도의회가 획정안을 직접 수정할 수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

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고, 시·도의회는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직접 수정할 수 없도록 하여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의 독립성과 공정성,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지방의회에 대한 정치개혁을 하고자 함(안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 신설)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의3제1항 중 “시·도”를 “시·도선거관리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의 “시·도지사가”를 “시·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시·도지사”를 “시·도의회의 의장”에게로 한다.

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4(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 확정) ① 시·도의회는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3개월까지 확정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의회의 의장은 제24조의3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을 시·도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회부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조례안(이하 “선거구조례안”이라 한다)을 제안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하되, 선거구획정안이 제26조제2

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시·도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선거구획정안의 위원회 회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.

⑤ 시·도의회의 의장은 선거구조례안 또는 선거구조례안이 포함된 조례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본회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조례안 또는 선거구조례안이 포함된 조례안을 수정 없이 바로 표결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의3(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) ①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선거구(이하 "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"라 한다)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시·도에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.	제24조의3(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) ① ----------시·도선거관리위원회----------.
②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학계·법조계·언론계·시민단체와 시·도의회 및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·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시·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----------.
③ ~ ④ (생 략)	③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, 그 이유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·도의회	⑤ ----------시·도의회

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의 의장----------.
⑥ ~ ⑧ (생 략)	⑥ ~ ⑧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24조의4(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 확정) ① 시·도의회는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3개월까지 확정하여야 한다. ② 시·도의회의 의장은 제24조의3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을 시·도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회부하여야 한다. ③ 제2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조례안(이하 “선거구조례안”이라 한다)을 제안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하되, 선거구획정안이 제26

	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자치구·시·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다.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시·도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선거구획정안의 위원회 회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. ⑤ 시·도의회의 의장은 선거구조례안 또는 선거구조례안이 포함된 조례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본회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조례안 또는 선거구조례안이 포함된 조례안을 수정 없이 바로 표결한다.